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동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513

발의연월일: 2025. 2. 27.

발 의 자:김동아·한준호·서삼석

허성무 • 민형배 • 최기상

박희승 · 임미애 · 정성호

정준호 · 김정호 · 복기왕

김우영 · 윤후덕 · 윤준병

전재수 · 정을호 · 김 윤

김영호 • 이병진 • 허종식

의원(2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처리시설의 설계·시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·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한편, 등록 후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기술인력의 확보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상공인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그 충격을 쉽게 회복하기 어려워 사업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소상공인에 대한 제재처분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소상공인이 처리시설 설계·시공업의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근 거를 마련함으로써,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 경영을 지원하고 경제 활동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(안 제35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).

법률 제 호
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5조제1항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기술인력의 사망·실종·퇴직 또는 휴직으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제재처분 유예에 관한 적용례) 제35조제1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도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5조(등록의 취소 등) ① 시장	제35조(등록의 취소 등) ①
·군수·구청장은 설계·시공	
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	
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	
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	
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	
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	
있다. 다만, 제1호·제2호 또는	
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	
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	4
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<u><단</u>	<u>다만,</u>
<u>서 신설></u>	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
	따른 소상공인이 기술인력의
	<u> 사망・실종・퇴직 또는 휴직</u>
	으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
	미달하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
	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
	<u>다.</u>
5. ~ 9. (생 략)	5. ~ 9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